

□ 채용목표제 적용

○ 이전지역인재*의 합격인원이 목표비율(선발예정인원의 30%)에 미달하는 경우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

- 시험실시 분야별 연간 채용모집인원이 6명 이상 전형인 경우만 적용

* 이전지역인재: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(대학원 제외)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

○ 적용대상: 5급 사무 장애·보훈전형

※ '26년도 장애보훈 모집인원: (장애 6명 / 상반기4, 하반기2) (보훈 6명/ 상반기 3, 하반기3)

○ 적용단계: 필기시험, 최종합격자 선발 시

○ 채용목표인원: 장애 1명, 보훈 1명(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%)

※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

○ 적용예외: 지원자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이 30% 이하인 경우 또는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공단에서 정한 전형별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선발